2018년 6월 순자본비율

(단위:백만원)

구분	2018년 6월 (당기 1분기)	2018년 3월 (전기)	증감
1. 영업용순자본 (A)	90,875	88,121	2,754
2. 총 위 험 (B)	16,610	10,355	6,255
3. 필요유지자기자본 (C)	29,400	29,400	0
4. 순자본비율 {(A-B)/C}	252.6%	264.5%	-11.9%p
5. 순자본 (A-B)	74,265	77,766	-3,501

*2016.1.1부터 순자본비율 적용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장 제1절 제30조(재무건전성 유지) ③ 금융투자업자는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간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.>